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한신 의원(찬성자 : 23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801 호

다. 발의일자 : 2023. 5. 30.

라. 회부일자 : 2023. 6. 5.

2. 제안이유

가. 「하수도법」 제65조제2항(사용료 등)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수입금의 예외적 용도로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음.

나. 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

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
(안 제23조제5항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 제65조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기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개인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공공하수도의 관리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「하수도법(이하 “법”)」 제65조제2항1)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주요골자(안 제23조제5항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사용료) ① ~ ④ (생략)	제23조(사용료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⑤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제28조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 공공하수도의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■ 개정안 검토의견

- 최근 생활악취에 관한 관심과 민감성 증대로 악취 관련 민원이

1) 「하수도법」 제65조(사용료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

③ - ④ (생략)

‘21년 1,653건에서 ‘22년 1,92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,

- 환경부의 「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」이 ‘20.3월 제정된 후 하수 악취 기준이 2배 강화²⁾되었고, 이에 서울수도 ‘22.5월 「하수악취 저감 기본계획」을 수립하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하수악취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.

-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하수도의 악취 관리뿐만 아니라 개인하수도의 악취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개인하수도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1의6에 따라 200인조 이상의 강제배출식 정화조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.

[표 2] 서울시 개인하수도 정화조 현황

(‘23.1.기준, 단위: 개소)

오수 배출방식	강제배출 방식(2.6%) ※ 고농도 악취 발생		자연유하 방식(97.4%) ※ 저농도 악취 발생					
			▶ 정화조가 하수관로 위치보다 아래에 있어 강제펌핑으로 오수 배출		▶ 정화조가 하수관로 위치보다 위에 있어 자연경사를 통한 오수 배출			
분뇨 처리방식	부패식		비부패식		부패식		비부패식	
총 544,429	10,080*		4,026	516,190**				
	200인조 이상 (법정관리)	200인조 미만		200인조 이상	200인조 미만	14,133		
	7,603	2,477		22,936	493,254			

* 강제배출 부패식 10,080개소 중 악취저감장치 기 설치: 200인조 이상 7,597개소 / 200인조 미만 579개소

** 자연유하 부패식 516,190개소 중 악취저감장치 기 설치: 200인조 이상 291개소

2) ※ 악취농도기준(3등급): 하수관로내 공기중 황화수소 농도 10ppm 이하 → 5ppm 이하

- 이에 본 개정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함으로써 하수 악취를 저감하고 시민의 생활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취지로 해석됨.
- 이와 관련하여 법 제65조제2항 단서로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점용료 또는 사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법의 취지를 잘 담고 있다 하겠음.
- 또한, 본 개정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,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인데,
 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“자연유하 정화조 하수악취 저감 실증조사 용역” 결과 자연유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악취 제거율이 평균 80%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,
 - 일례로, 1,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비를 지원(설치비 분담 비율(안)=시 4 : 자치구 4 : 소유자 2)하는

것을 가정할 경우 연간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.

- 따라서, 법 제65조제2항 단서의 취지와 서울시의 개인하수도에 대한 악취 저감 의지 등을 살펴볼 때 본 개정안은 그 의미가 크다 여겨짐.
- 다만, 개인하수도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게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, 자치구, 개인이 각각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의 개인하수도 관리 의무 및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, 이에 따라 지원대상, 지원절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참고로, 경기도는 「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」를 제정([시행 2004. 11. 1.] [경기도조례 제3362호, 2004. 11. 1., 제정]하여 도비 30%, 시·군비 50%, 개인부담 20%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개인하수도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.